

신구조문대비표
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

대외무역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968호, 2022. 11. 1., 타법개정]	대외무역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042호, 2022. 12. 9., 일부개정]
제12조의2(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)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가. (생략) 나. 가목에 따른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)이나 중견기업(「중견기업성장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)이 생산한 물품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12조의2(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)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가목에 따른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중견기업(「중견기업 성장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)이 생산한 물품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7조의2(서류검사) 법 제33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. 1.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서류 2.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, 수량,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서류 3.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제57조의2(자료조사) 법 제33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 1.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.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, 수량,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.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제59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(이하 “과징금납부의무자”라 한다)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59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(이하 “과징금납부의무자”라 한다)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0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) ① (생략)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,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.	제60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) ① (현행과 같음)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, 중소기업 여부 ,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.
제66조(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)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. ②수출 물품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수출 물품의 가격·수량 등에 관한 서류 3. 그 밖에 수출물품 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·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.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제66조(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)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(이하 “국내생산물품등”이라 한다)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2.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3.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②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가격·수량 등에 관한 서류 3. 그 밖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·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이나 협정 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.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제90조(수수료)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	제90조(수수료)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⑤ (생략)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. 1.1의2. (생략) <신설> 2.3. (생략) ⑦ ~ ⑫ (생략)	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. 1.1의2. (현행과 같음) 1의3.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 2.3. (현행과 같음) ⑦ ~ ⑫ (현행과 같음)
--	--